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534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명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기원

피고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

변론 종결2024. 9. 25.

판결 선고2024. 10. 30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9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1. 9. 8. 접수 제345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는 주식회사 E(이하 'E'라 한다)에 2020. 4. 28. 20,000,000원, 2020. 9. 4.

30,000,000원 합계 50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원고 B는 2020. 9. 4. E에 4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(이하 위 각 원고들의 대여금을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대여금'이라 한다).

나. 2022. 10. 20. E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22. 10. 20. 원고들의 E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하여, D이 원고 A에게 대여원금 50,000,000원과 지연이자 26,000,000원을, 원고 B에게 대여원금 40,000,000원, 지연이자 8,000,000원을 2023. 5. 30.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'확약서'를 작성해주었다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E,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170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. 10. 13. 위 법원으로부터 'E, D 등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,000,000원, 원고 B에게 48,000,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. 10. 2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, 피고는 2021. 9. 8. D에게 410,000,000원을 대여하고,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과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1. 9. 8. 접수 제345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

1)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,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

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).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. 9. 8. 마쳐진 사실, D이 2022. 10. 20. 원고들과 사이에 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별개의 법인격인 E의 대표이사인 D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점(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점)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, 결국 위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전호재

별지